

vol.37  
September. 2019

# 모니터링 리포트

## 이 사람의 향기

- 장애는 불편함이 있다  
불편함은 익숙해지면 없어진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

## 포커스

- 여행의 시작과 끝, 숙박 예약 장애인편의 정보 뺑점 호텔 36%
- 언론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속 언론의 책임
- 2019년 17곳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분석

## 이슈포착

- 사람에게 제도를 맞추는 개인맞춤형 예산 정책 방향  
: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 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예방·준비·피난 매뉴얼의 혼재 '몸이 기억하는' 시스템 필요  
: 이정수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신건강은 패션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들어보인 한 모델@News1

## 정신건강은 패션이 아니다

〈Gucci Spring-Summer 2020 Fashion Show〉(밀라노, 2019. 9)에서 모델들은 런웨이를 걷는 대신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싣고 있다. 이날 모델로 참여한 아이사 탄 존스가 패션쇼 도중 'MENTAL HEALTH IS NOT FASHION'이라고 쓰인 자신의 손바닥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모델들에게 정신장애인을 떠올리게 하는 구속복을 입히고, 공장 의 고깃덩어리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서게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구찌가 옷을 팔기 위해 정신질환과 투쟁하는 이들을 소품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 공옥진은 신체 장애를 가진 동생과 조카들이 있었고, 해방 이후 장애인 걸인들과 함께 각설이 패 활동을 했다.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녀의 '병신춤'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보기에 따라서는 패션쇼의 의도를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 속에서 자유와 선택권을 억압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구찌는 2018년 2월 〈Gucci fall-winter 2018-2019 fashion show〉에서도 검정 피부에 커다란 입술로 상징되는 '블랙 페이스'를 연상시키는 스웨터를 선보였다가 인종차별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 Contents

2019 가을 | Autumn

- 02 편집자 편지  
정쟁(政爭) 속에 숨은 인권 찾기
- 04 이 사람의 향기  
장애는 불편함이 있다  
불편함은 익숙해지면 없어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
- 14 포커스 1  
여행의 시작과 끝, 숙박 예약  
장애인편의 정보 빵점 호텔 36%
- 24 포커스 2  
언론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속  
언론의 책임
- 32 포커스 3  
2019년 17곳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분석
- 48 이슈포착 1  
사람에게 제도를 맞추는  
개인맞춤형 예산 정책 방향
- 54 이슈포착 2  
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예방·준비·피난 매뉴얼의 혼재  
'몸이 기억하는' 시스템 필요
- 58 영화평  
〈퍼펙트맨〉 설정과 같은 영화들  
장애와 계급, 하층보다 바닥으로 그려지다
- 62 포럼은 지금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응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 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mailto: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물음표와느낌표 02) 822-0772

## 정쟁(政爭) 속에 숨은 인권 찾기

선거법, 검찰개혁,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 정쟁의 한 가운데 있는 이슈는 우리에게 피로감으로 다가옵니다. 주권자들의 눈에 이슈는 보지 않고 정쟁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무관심이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들은 이슈를 정쟁이라는 블랙홀 안으로 꾸겨 넣습니다. 이들은 주권자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것도 정치냐'는 힐난을 오히려 반깁니다. 주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정치로부터 이탈하기를 바랍니다.

주권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정치 권력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법 개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에 부여된 법·제도적 권력, 수사 관행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검찰개혁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구성원들의 기회균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공수처 이슈에 접근해야 합니다.

인권보장과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정쟁 속 이슈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치와 시민화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그것이 정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 정책을 낳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인권의 가치는 정치를 넘어서지만,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19년 가을호에 담긴 모니터링리포트 이슈들도 인권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포커스 1〉은 주요 숙박 APP에서 파악한 여행지 호텔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실태를 다루면서, 조사대상 호텔의 36%가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약이 이동과 물리적 접근 제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2〉는 센터에서 수행 중인 언론모니터링 지침에 담겨있는 언론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 언론이 장애인의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제삼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기여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3〉은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을 규모, 분야, 주요사업별로 접근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물론 연도별 추이를 세부내용과 함께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 인권을 연계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슈포착 1〉은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 단순화 시행 전·후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실효성에 너무 천착한 나머지, 급여 내용과 전달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확장·개선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슈포착 2〉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안전을 위해, 건물 특성과 장애 유형에 맞는 피난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적 피난훈련 및 교육으로 '몸이 기억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 불편한 이슈입니다. 공감, 공존 능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연구자 출신의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 이사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이 사람의 향기〉는 장애인 고용을 불편함, 편견 해소(인식 개선), 공존의 관점에서 곱씹게 합니다.

우리는 영화가 그리고 있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삶을 통해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영화평〉에서 류미레 감독은 장애인이 아닌 장애가 가진 사회·심리적 영향력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아래로 추락시킬 수 있는 장애가 만드는 정형화된 사람 사이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

## 장애는 불편함이 있다 불편함은 익숙해지면 없어진다

정리 | 윤선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고용 시장에서 자신을 팔기 위해 남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 그 최전선에 자기소개서가 있다. 겸손까지 떨 여유는 없다. 진부하다 못해 곰팡내 나는 접근법은 피해야 한다. 첫 단락은 깜작 놀랄 정도로 흥미진진한 내용이어야 한다. 남과 다른 특성이나 사연이 없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해가 안 된다면, 진부함은 당신의宿命이다. 그냥 몇 년 몇 월 어디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sup>(1)</sup>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남과 다른 특성과 사연은 차고 넘친다. 겸손을 떨어도 원치 않는 '주목'은 피할 수 없다. 장애인 고용 시장, 그 최전선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다. 장애인 노동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촉진이사 남용현 박사를 만났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니터링리포트 독자에게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촉진이사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취업알선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합니다. 장애학생 취업 지원, 직업능력평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인턴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등. 상담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용이 가능한 분은 취업알선을 합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우면, 직무지도원과 3주~7주 정도 현장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등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설립 등. 시설장비 지원도 하고 있어요. 장애인고용의무<sup>(2)</sup> 이행지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도 총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장애인과 사업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인데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선제적·능동적·주체적으로 대응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선사인 논술사전,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83p-85p의 자기소개서편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단어를 쉽게 풀이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에 대해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인턴제<sup>(3)</sup>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경험하게 해서 채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중증장애인 가운데 취업이 더욱 어려운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인턴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죠. 장애인 고용이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장애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서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던 기업에서 장애인을 한번 채용하면, 이후 장애인 채용은 확실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인식개선교육이 중요합니다. 선입견을 없애니까요. 지난해 5월 29일부터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1인 이상 사업체(약 400만개)가 인식개선교육 대상인데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합니다. 현실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죠. 공단은 사업주의 교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교육 강사를 양성합니다. 교육기관 관리, 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개발원에서 정책연구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셨는데요. 주요 연구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로 담당했던 분야는 장애인 고용정책, 제도 및 사업연구입니다. 그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 과제는 장애인 고용정책 평가와 미래전략,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 합리화 방안 등의 연구수행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과 제도개편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단의 핵심사업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 표준사업장, 근로지원인, 연계고용,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노동권 강화,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사업, 통합지원서비스, 직업재활 전문요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등. 국제 비교연구

(3) 인턴기간 동안 약정 임금의 80%, 최대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월 65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 다수 수행하여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 연구원으로 느낀 보람이나 고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연구원 시절 보람은 매우 컸죠.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던 제도 또는 사업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물론, 제가 제안했던 새로운 제도나 사업이 도입될 때 연구자로서 느끼는 기쁨이 꽤나 큼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죠. 연구자로서 갖게 되는 부담도 작지 않았구요. 특히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사안에 따라 연구 책임자인 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공단이 비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갈등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 객관성에 중심을 두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어떤 제도든 실제 운영하다보면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죠. 그럼에도 연구 결과물이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업종별 적용제외률<sup>(4)</sup> 제도를 없앤 것이라든가, 고용의무 대상기업을 30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강화한 것, 고용부담금제도 개선을 뒷받침한 연구 등이죠. 장애인 고용의 큰 주제를 건드린 연구라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보고서 「독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사회법전 제 9권을 중심으로)<sup>(5)</sup>」 책임연구자셨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의무 제도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개선할 것 또는 중증장애인 가산제도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보고서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당시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근로지원인 제도,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부과 강화 등의 제안은 이미 실시하거나 제도개편이 이루어졌습

(4)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광업은 적용제외를 90%. 당시 고용의무율은 2% 였다. 상시 근로자 1000명인 회사는 고용의무를 2%를 적용하면, 장애인 20명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면, 상시근로자의 90%를 제외하고 100명에 대해 고용의무를 2%를 적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명의 장애인만 고용하면 되는 제도다.

(5) 「독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보호고용 영역과 일반고용 영역의 단절현상, 해고보호제도의 한계, 중증장애인 인력 관련 수요공급의 질적 편차, 고령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등을 독일 장애인고용 정책의 한계이자 과제라고 발표. 2009년.

니다. 정부부분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는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하지만 당시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많은 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사업주 지원제도의 탄력적 운영, 해고보호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대표제도, 통합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체 설립 시 장애인 비율 상한선 설정 등이죠.

**UNCRPD 국가보고서는 장애인 고용의 확대 속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문제가 있어요. 2018년 민간기업의 고용의무 이행비율은 44.4%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특히 대기업(1,000인 이상)의 고용의무 이행율이 훨씬 낮습니다.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노동자를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장애인 고용의무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이다 보니, 장애인 노동자 대부분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편이 필요한 배경입니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의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고용의무를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구요. 현재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제재조치만 있는데,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저조하거나, 몇 년씩 장애인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현행 부담금제도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의무제도 개편에 있어서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수준 검토를 따로 떼어 논의하는 것은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수준, 고용의무 및 부담금 부과 대상 기업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의무(현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와 부담금 부과(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준은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낮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부과 검토도 중요합니다.

**의무고용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마다 장애판정 기준이나 고용의무 대상 기업체의 규모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의무고용률의 절대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법적 의무고용률을 산출할 때, 장애인 출현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구 비율이 5%인데요.

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의무고용률 인상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인구가 5%지만 다 경제활동 인구는 아니다. 15세 이상 따지면 더 줄어들고, 구직의사가 있느냐를 빼면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은 무리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실업률이 3%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실업률은 4%만 되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편견이라고.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낮은 2%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5% 이내에서 의무고용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고용의무제도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부과 검토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더 듣고 싶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부담금 차등 부과를 검토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대기업의 평균임금에 비해 고용부담금 수준이 훨씬 낮아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거죠.

현재 100인 이상 기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인데, 향후에는 기업규모별로 부담금 차등부과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공단 소속 고용개발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단에서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부과제도 도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부담금에 대해 좀 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sup>6)</sup>을 초과하여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규모 불문)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1인당 매월 30~60만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고용장려금 지원금액은 약 1,900억 원 수준입니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용장려금 지급금액과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오랜 기간 지급단가가 동결된데 반하여, 부담기초액은 해마다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의 적립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는데요, 올해 기금 예산은 약 4,80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800억 원 이상 증액한 수준이죠. 내년은 900억 원 수준의 증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도 내년부터 단가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요. 현재의 30~60만원에서 30~8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6)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민간기업 3.1%

올해 장애인고용공단은 조직개편과 사업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복지TV에서 인터뷰 하셨습니다.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공단은 지난 해 경영전략체계를 변경하여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공단의 핵심가치를 장애 감수성, 시장 친화성 및 조직 투명성으로 새롭게 고쳤습니다. 3대 핵심가치 가운데 장애 감수성은 장애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시장 친화성은 장애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도, 조직 투명성은 공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통해 공단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인 중증장애인의 직무개발과 훈련,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양적·질적으로 늘어난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 중증통합지원국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인식개선사업의 중요성도 커져 인식개선센터가 기존 홍보협력실 업무에서 별도 조직으로 독립했어요.

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들도 궁금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단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가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자조모임을 통한 건강관리,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방법 등의 일상생활 지원, 취업을 위한 준비, 사업체 방문 등. 취업의욕 고취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컨설팅, 직무체험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업의식 등을 고취하여 미래의 직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교 2, 3학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난해부터 고교 전(全)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공부하셨는데요, 독일에서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사는 동안 지체장애를 가진 제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잠시 잊었어요. 수영장에 가면 저는 머리 까만 동양인이고 다리도 불편하고, 저한테 사람들의 눈길이 따라오는 게 정상이죠. 한국에 있을 땐 늘 그랬거든요. 근데 독일 수영장에선 중증장애인을 보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어도 눈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낯설음이 아닌 익숙함. 오랜 독일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던 해,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어요. 초등학교생들이 단체로 왔는데, 수영장 입구부터 제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수십 개의 초롱초롱한 눈길이 저를 따라왔어요. '아, 내가 장애인이지.' 그날 다시 실감했죠.

장애는 불편함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저도 동의하지만, 저는 오히려 '장애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집중하자는 거죠. 아주 오래 전에 안면에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 눈을 보면서 대화하면 될 것을,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당황해서, 그분이 불편해 하실까봐 일부러 태연한 척 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불편함과 어색함은 사라졌죠. 경험이 중요한 거죠. 불편함은 경험해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불편함도 사라지는 거죠. 장애인 고용도 일단 채용해보자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니 뭐가 어려운가. 채용해보니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거구요. 제가 오랜 기간 살았던 독일은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고용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발대식  
2 국회사무처 장애인공무원 업무협약  
3 프랑스 대사, 키키지랩 대표와



4 SK 실트론 인증 및 오픈식  
5 VOICE 프로젝트 워크숍  
6 부산지역본부 방문







## 숙박 예약앱으로 본 호텔 장애인편의 정보제공 여행의 시작과 끝, 숙박 예약 장애인편의 정보 빵점 호텔 36%

윤선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낯아서 쓸모가 없거나 진부한 지식을 ‘무용지식’이라 한다. 세상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상식의 반열에 올랐던 지식이 무용지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빨라진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그러하다. 존재만으로 환영받던 시절이 있었다.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를, 지하철 계단을 따라 리프트를, 육교에 설치한 승강기. 이런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어 방치되거나 철거되곤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방치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분명한 것은,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장애인의 관광권을 주목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당한 편의란 무엇인가.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그리고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안내”다.<sup>(1)</sup> 장애인용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보조 인력을 안내하라는 것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장애인관광환경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6년도 지정 열린관광지 4곳을 표본으로, 표본과 관광지 자원이 유사한 일반관광지 4곳, 총 8곳을 선정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2018년 장애인관광환경모니터링<sup>(2)</sup> 방식과 같다.

(1) 정당한 편의 포함된 관광정보와 보조인력 규정은 2018년 3월 27일 발표된 대통령령에 의해 추가되었다.

(2) 2018년 모니터링은 2015년도 지정 열린관광지 4곳을 표본으로 비교가능 일반관광지 4곳을 포함, 총 8곳의 관광지를 조사했다. 전동휠체어 장애인 단원의 사용성을 기준으로 관광지와 인접 숙박, 식당 등을 조사했다.

2019년 장애인관광환경 모니터링에서는 시범적으로 숙박예약앱(이하 숙박앱)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숙박업체 선정은 모니터링 조사대상인 8곳의 관광지로부터 20km이내 5성급, 4성급, 3성급 호텔로 한정했다. 숙박앱에 등록된 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 장애인편의 정보 제공 실태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숙박앱은 부킹닷컴을 활용했다. 5성급호텔 부터 개인 아파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숙소 검색이 가능한 점, 21개의 장애인편의 정보필터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숙박앱의 정보 검색 모니터링 기간<sup>(3)</sup>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검색 조건은 성인 2인 1실 기준. 숙박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다.

**표1 2019 장애인관광환경 모니터링 대상지와 관광자원**

열린관광지 표본군	일반관광지 대조군	비교 관광자원
여수시 오동도	부산시 태종대	내륙 연결 섬+해양+공원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강릉시 경포호+경포해수욕장	해변+바다체험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생태숲+선운사	문경새재도립공원+생태공원+전통세트장	도립공원+생태숲+전통문화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정동진역	부산시 다대포 해변공원+다대포역	해변+공원+기차역

2019년 장애인관광환경 모니터링 대상 열린관광지 4곳은 여수시 오동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강릉시 정동진모래시계공원이다. 표본과 관광자원이 유사한 비교대상 일반관광지 4곳은 부산시 태종대,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부산시 다대포해수욕장이다. **표1** 참고.

(3) 숙박앱의 정보안내는 호텔측에서 상시 변경 가능하다. 때문에 8월 13일부터 15일 사이의 검색 결과는 다른 날짜의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숙박앱 부킹닷컴의 장애인편의 정보 검색 필터는 총 21개다. 그중 '접근성' 장애인 편의 필터는 총 8개다. 음성안내,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 제공, 시각장애인용 점자 제공, 비상연락줄이 설치된 화장실, 키낮은 개수대, 키높은 변기,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이동가능. '객실레벨'의 장애인편의 필터는 총 11개다. 지상층 전체유닛, 엘리베이터로 위층 이동가능, 유닛전체 휠체어 사용가능, 손잡이 레일이 구비된 화장실, 베리어프리 욕조, 롤인 샤워, 욕조와 분리된 샤워공간, 높이조절 좌변기, 낮은 세면대, 비상 알람이 설치된 화장실, 샤워 의자. 그 외에 장애인 편의 필터는 '주차장'의 장애인주차장, '일반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다.

**표2 숙박 예약 앱 부킹닷컴 장애인편의 필터**

필터 분류	장애인편의 정보 상세 필터				
접근성	음성안내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 제공	시각장애인용 점자 제공	비상연락줄이 설치된 화장실	키 낮은 개수대
	키 높은 변기	* <sup>(4)</sup>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이동가능		
객실 레벨	지상층 전체유닛	*엘리베이터로 위층 이동가능	유닛전체 휠체어 이동가능	손잡이 레일이 구비된 화장실	베리어프리 욕조
	롤인 샤워	욕조와 분리된 샤워 공간	높이 조절 좌변기	낮은 세면대	비상 알람이 설치된 화장실
	샤워 의자				
주차	*장애인 주차				
일반	*장애인 편의시설				

**3성급 호텔, 5성급 호텔보다 상위권 차지**

검색한 호텔은 5성급 7곳, 4성급 9곳, 3성급 41곳으로 총 57곳이다. 숙박앱의 21개 장애인편의 정보 중 10개의 장애인편의 정보를 제공한 남포하운드프리미어호텔(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24)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하운드호텔(부산시 중구 대청로

(4) 표 (2)의 \* 항목은 21개 장애인편의 필터 중 장애인관광환경 모니터링 단원들이 뽑은 필수 편의시설 정보 항목이다.

126번길 9)이 8개로 2위, 7개의 장애인편의 정보를 제공한 토요일인 부산역 1호점 (부산시 동구 초량1동 중앙대로 196번길 12), 호텔머드린(보령시 해수욕장8길 28) 과 메리머드호텔(보령시 해수욕장8길 52)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모두 3성급 호텔 이다.

**장애인편의 검색 안 되는 5성급 호텔**

숙박앱으로 검색한 5성급 호텔의 장애인편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코모도호텔(부 산시 중구 중구로 151) 0개, 여수베네치아호텔앤리조트(여수시 오동도로 61-13) 0 개, 아난티해남(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179번길 40-109) 1개, 씨마크호텔(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2개, 스카이버이경포호텔(강릉시 해안로 476) 2개, 세인트존스 경포호텔(강릉시 창해로 307)과 호텔탑스텐(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455-34)이 각각 3개다. 21개 장애인편의 정보 중 3개를 제공한 두 호텔이 5성급 호텔에서는 최고 점 수를 받은 셈이다. 표3 참고.

**표3 숙박 예약앱 부킹닷컴의 21개 장애인편의 필터 정보가 검색된 호텔별 항목**

호텔 급	숙박앱으로 검색한 호텔	숙박앱 호텔 정보에서 검색된 장애인편의
5성급	코모도호텔부산	0
	여수베네치아호텔(리조트)	0
	아난티남해	1 일반 장애인편의시설(이하 일반)
	호텔 탑스텐	3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장, 일반
	세인트존스경포호텔	3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주차장, 일반
	씨마크호텔	2 장애인주차장, 일반
	스카이버이경포호텔	2 장애인주차장, 일반
	라발스호텔	6 비상연락줄, 낮은개수대, 키높은변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장, 일반
	밸류호텔부산	3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장, 일반
	호텔아벤트리부산	0
	크라운하버호텔	2 장애인주차장, 일반

12	4성급	지앤비호텔	0	
13		아스티호텔	1	일반
14		STX리조트	0	
15		여수하든베이호텔	0	
16		강릉씨베이호텔	2	장애인주차장, 일반
17	3성급	오이아호텔	1	일반
18		베이하운드호텔	2	장애인주차장, 일반
19		센트럴파크호텔	0	
20		타워힐호텔	1	일반
21		엘리제호텔	0	
22		부티크호텔와이티티남포	4	장애인화장실,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 주차장, 일반
23		스탠포드인부산	1	일반
24		호텔노아	2	장애인주차장, 일반
25		호텔포레프리미어남포	5	비상연락줄, 장애인화장실, 휠체어이동 기능, 장애인주차장, 일반
26		하운드호텔	8	음성안내, 점자표지, 점자, 비상연락줄, 키낮은개수대,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 주차장, 일반
27		남포하운드프리미어	10	음성안내, 점자표지, 점자, 비상연락줄, 키낮은개수대, 키높은변기, 장애인화장 실,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주차장, 일반
28		호텔마르쉐	1	일반
29		토요코인부산역2호	0	
30		비센트호텔	0	
31		힐사이드호텔	0	
32	노떼라미아호텔	0		
33	부산뷰호텔부산역	1	장애인주차장	
34	아몬드호텔부산역	0		
35	토요코인부산역1호점	7	점자, 비상연락줄, 키낮은개수대,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주차장, 일반	

36	3성급	광장호텔	3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주차장, 일반
37		Busan Station Maximum호텔	6	비상연락줄, 키낮은개수대, 키높은변기, 장애인화장실, 휠체어이동기능, 일반
38		더비에스호텔부산역	0	
39		베스트인시티호텔	2	장애인주차장, 일반
40		호텔포레부산역	0	
41		이데아호텔	2	장애인주차장, 일반
42		베니카아스타힐스호텔	4	장애인화장실,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주차장, 일반
43		한화리조트대천파로스	0	
44		호텔머드린	7	점자표지, 점자, 비상연락줄, 장애인화장실,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주차장, 일반
45		메리머드호텔	7	점자표지, 점자, 키높은변기, 장애인화장실, 휠체어이동기능, 장애인주차장, 일반
46		에이치에스관광호텔	1	장애인주차장
47		호텔마띠유여수	0	
48		여수더호텔수	1	일반
49		여수한옥호텔오동재	0	
50		호텔더원	1	장애인주차장
51		엘레나(비즈니스)호텔	0	
52		베니키아호텔여수	1	장애인주차장
53		남해비치호텔	0	
54		하슬라이트월드뮤지엄호텔	0	
55		강릉관광호텔	1	장애인주차장
56	뉴동해관광호텔	1	장애인주차장	
57	강릉그레이호텔	0		

장애인편의 정보 0개로 검색된 5성급 호텔 2곳과 4성급 호텔 1곳에 장애인편의 정보를 투숙객 입장에서 문의 했다. 3곳의 호텔에서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다는 답변 메일과 전화 안내를 받았다. 다음은 장애인편의 정보 검색 0개인 5성급 여수베

네치아 호텔앤리조트에 보낸 문의메일과 호텔의 답변메일 내용이다.

질문 : 호텔의 진입과 내부 부대시설, 이동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가요?  
 답변 : 진입로에 슬로프가 갖추어져 있어 입구 및 내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질문 : 장애인 주차장이나 장애인화장실 등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나요?  
 답변 : 장애인 주차시설은 물론 화장실도 갖춰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객실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객실이 있나요?  
 답변 : 장애인 객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휠체어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박앱 부킹닷컴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한 다른 5성급 호텔스카이베이경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디럭스룸 호수 전망으로 예약하실 경우 휠체어 이동이 원활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객실에는 문턱이 없고 5층 혹은 6층에 위치하였습니다. 방안 화장실에 비데는 제공되지 않고 안전 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대부분의 시설로 이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휠체어로 수영장 또한 이동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를 받아 관광호텔 등급평가기준(5성급) 자료를 살펴보았다. 현장평가 700점 만점에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 항목으로 분류된 점수는 총 21점이다.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장애인용 경보피난설비,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욕실, 장애인 침실, 시각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장애인 이동 편의 항목이다.

관광숙박시설인 5성급 호텔은 ‘장애인등 편의법<sup>5)</sup>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다. 2017년 개정된 장차법 시행령 제15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는 같은 법 제24조 2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약칭.



## 언론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속 언론의 책임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언론모니터링은 장애인 비하 및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지면 기사를 찾아낸다.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바로잡는 등 장애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사도 선정해 격월간지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 언론모니터링은 다음 네 가지 문서를 참고하고 있다.

- 언론보도의 준칙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2011년)
- 미디어 가이드라인(국제노동기구, 2014년)
- 미디어 가이드라인(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2016년)
- 방송가이드라인(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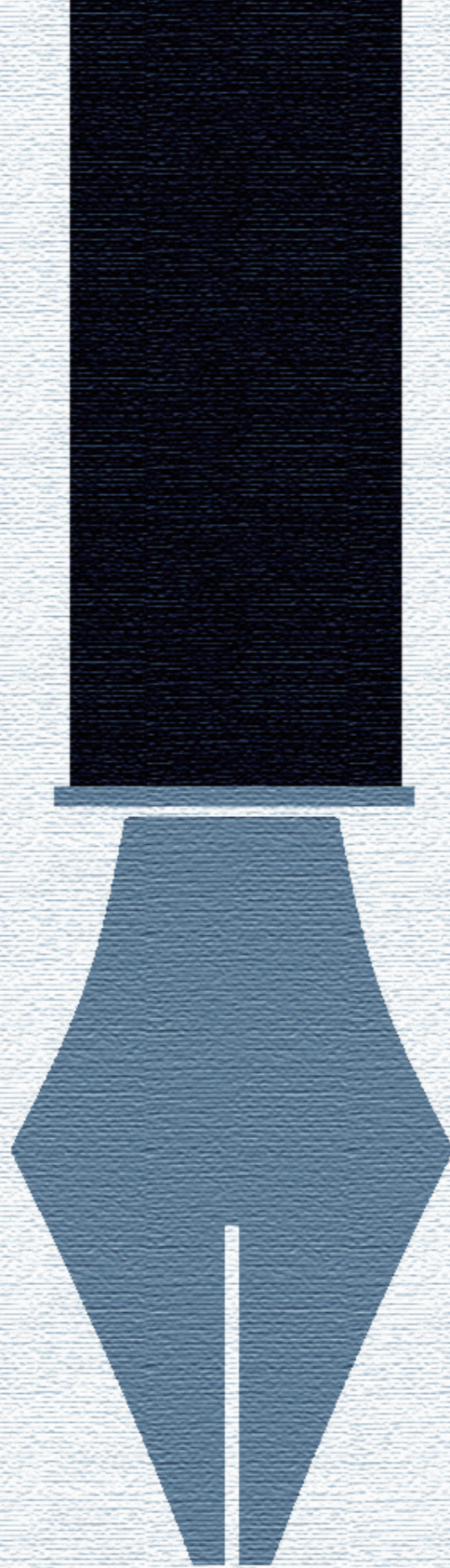
센터의 언론모니터링 지침은 언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언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존중 책임을 증진해야 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 I. 인권존중 책임

언론이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관점에서 보도를 접근해야 한다.

첫째, 언론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언론 보도가 장애인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 언론 보도 장애 관련 가이드 라인



인 태도와 시선을 갖는 것에 기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언론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면 안 된다. 셋째, 언론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보도를 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언론은 직접적으로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착화시켜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보도는 많다. 예로 정신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보도를 들 수 있다. 올해 4월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의 조현병에 대한 집중보도가 이어졌다. 몇 주 사이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자 ‘또 조현병’이라는 언론기사 제목이 늘어났다. 함축적인 기사 제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부정적인 일부 사안을 과장해 일반화 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행태를 띠고 있다.

#### ① 장애인을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 슬픔의 정조로 묘사

장애인을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 슬픔의 정조로 묘사하는 보도는 독자들이 장애인을 동정과 자선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평생 ~ 해본 적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등의 표현은 장애를 불행의 정조로, 또는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어둡고 절망적으로 그린다. 또한 장애인이 이룬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그가 처한 상황이나 손상을 의존적, 무기력, 불행으로 표현하거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점을 부각시켜 장애인을 이질적 또는 초인적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 ② 장애인을 초인 또는 감동의 원천으로 과장

장애인을 초인 또는 감동의 원천으로 과장하는 보도도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장애인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보고 감동을 받았다’, ‘발달장

애인은 순수하다’ 등과 같은 표현은 장애인을 힐링, 감동의 원천으로 인식시킨다. 장애인은 다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회구성원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다.

#### ③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표현

장애는 치료할 수 있고 재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인가? 아니다. 치료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질병과 달리 장애는 개인의 삶의 방식, 손상, 사회 인식, 물리·환경적 장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장애를 극복과 재활의 대상으로 보도한다. 많은 언론에서 장애인의 성공사례를 보도할 때 ‘장애를 딛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표현은 장애를 이겨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인이 가진 손상을 장애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표현이다.

#### ④ 의학적 용어로 장애를 표현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환자는 다르지만 아직까지 구분하지 못하고 의학적인 용어로 장애를 표현하는 보도가 많다. 언론은 ‘장애를 앓고 있다’처럼 장애를 질병으로 보도하거나 ‘뇌성마비환자’, ‘정신장애환자’와 같이 장애인을 환자로 보도하고 있다. ‘장애’와 ‘질환(질병)’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⑤ 장애인의 가족을 죄인시하거나 영웅화

장애인에 초점을 둔 기사가 많지만 장애인 가족에 대한 기사도 많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크고 작은 가족의 희생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장애인의 가족을 죄인시하거나 영웅화하여 보도가 적지 않다.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한 장애인선수에 대한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장애인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 건 가족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겠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노력하여 얻은 성과다. 장애인 가족의 희생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영웅시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를 비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 ⑥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을 어린이이 취급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도 중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아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떼쓰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 발달장애인을 '영원한 어린이'로 취급한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지만 이런 기사는 신체적 나이와 정신적 나이를 나누고 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일상생활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어린이 취급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⑦ 사람이 아니라 장애와 보장구에 초점

사람이 아닌 장애와 보장구에 초점을 맞춘 보도도 눈에 띈다.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하면 초점은 장애인이 아닌 휠체어에 맞춰진다. 한 사람의 삶이 '휠체어'라는 보장구에 의해 정의됨으로써 장애를 가진 한 인간의 주체성은 사라지게 된다. 장애인을 비주체적, 의존적 존재로 보이게 한다. 보장구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굳이 휠체어를 넣어야한다면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

⑧ 장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소개할 때 자주 나타난다.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된다.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에서 '노예 생활', '엄전 노예'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고 있다. 노동 착취라는 자본주의적 현상을 고대사회의 노예 노동에 대입 시켜 과장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는 경우다.

⑨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비하

장애 관련 기사를 보도할 때는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 선택도 중요하다. 하지만 '병어리', '귀머거리', '장님', '절름발이' 등의 용어는 물론, 정신질환자를 '반사회성'과 '공격성' 기질로 일반화하는 보도는 여전히 많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다.

⑩ 부정적 비유에 장애를 이용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적 비유에 장애를 이용하는 표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앉은뱅이 의자', '앉은뱅이책상', '병어리 냉가슴 앓는다', '눈먼 돈' 등 다양하다. 오래전부터 관용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가슴앓이'나 '냉가슴' 같은 대체 용

어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과 영향력을 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⑪ 기타 부적절한 표현

이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무심코 사용하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비하 용어	올바른 표현
정상인, 일반인(장애인의 반대말로 쓰일 경우)	비장애인
애자, 장애자,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앉은뱅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찔뚝발이, 찔뚝이, 찌따,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팔이	지체장애인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인
병어리, 귀머거리, 아다다, 말더듬이, 아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꼼추, 곱추, 곱사등이	지체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또라이, 백치, 바보 천치, 얼간이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정신장애인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저신장장애)
언청이, 언청새님, 째보	언어장애인
배넛병신	선천성 장애인
흑부리	안면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II. 사회적 역할(인권 증진)

인권 존중 책임이 부정적인 기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인권 증진 노력은 반대로 좋은 기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언론은 취약한 장애인 인권실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 보호 의무 관점에서 접근하고 조명해야 한다. 장애인의 취약한 인권상황이 국가와 지자체가 인권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서 연유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가는 법과 제도, 사법적 판결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과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언론은 사회구성원들의 장애인 인권존중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 또는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인권존중 책임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언론 보도는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탐사보도, 기획 기사, 캠페인 등을 통해 인권을 증진할 수 있고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 정책,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 촉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보도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장애인 인권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다.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이 그 취지 및 목적과는 반대로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해외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다. 이행의 실효성은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

②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장애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점을 폭로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등한 존재이며 인간 다양성의 일부로 바라보는 보도가 필요하다.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중되는 보도는 인권감수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특정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장애인의 삶과 인권에 대해 꾸준히 보도하는 것 또한 인권교육매체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직면한 쟁점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

인권 사각지대의 장애인 현안을 발굴하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사를 보도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부정적인 기사가 되고 장애인이 직면한 쟁점에 대해 대중의 오해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장애인 단체와 충분히 인터뷰를 진행한 후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다.

④ 장애인 당사자 권익을 옹호

당사자 관점에는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권익옹호 활동 또는 장애인 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보도도 포함된다. 권익옹호는 포괄적이어서 앞서 기술한 긍정적인 언론보도 행태를 모두 포함한다. 즉,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는 물론 사회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언론의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책임이 따른다. 언론은 인권존중 책임은 물론 인권증진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보도 행태에 통합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장애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장애 시민사회는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기사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 보장과 증진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인권보장과 증진을 유도하는 사회적 역할이 언론의 자발적인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면, 언론 보도가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은 법적 책임의 영역이다. 윤리적 책임 수준이 아니다.

## 2019년 17곳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분석

한동국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광역시·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실현된다. “예산은 정책”이며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장애인 정책 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 광역시·도별로 장애인 정책 예산의 내역과 총액 규모를 알면 그 지역 장애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각 광역시·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보건, 복지, 노동)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통합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정책 예산 반영에 노력해왔다.

각 광역시·도는 장애인 주거지원과 의료 재활, 사회서비스와 자립생활지원 등 차별이나 불평등이 발생하는 부문에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보편적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장애계의 평가다.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었다. 이후 당선된 광역시·도 단체장들은 각 지역 내의 장애인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 정책과 제도 수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센터’)는 5월 ~ 6월 동안 17곳의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17곳의 광역시·도의 장애인 예산을 분석하였다.

###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기간: 2019년 5월~6월 (2개월)
2. 모니터링 대상: 17곳 광역시·도
3. 모니터링 자료: 17곳 광역시·도 2019년 예산서 사업설명자료, 각 목 명세서
4. 모니터링 자료 습득방법: 17곳 광역시·도 홈페이지 예산정보 공개자료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책예산 모니터단원들이 17곳 광역시·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2019년 본예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08년부터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가 도출한 핵심키워드를 활용해 발췌하였다. 사용한 핵심 키워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장애인 예산 발췌를 위한 핵심 검색 키워드

장애, 편의, 정신요양,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 한센(병), 재활, 특수교육, 정신보건, 휠체어, 수화, 특수보육, 센터도우미, 웹 접근성, 저상버스, 특별운송, 특별교통, 언어발달, 발달, 미숙아, 대사이상, 난치, 난청

장애인 정책 예산을 발췌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 <세출사업명세서>를 살펴보았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사업명세서까지 모두 살펴보았다. 센터는 발췌한 장애인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세부사업명과 세부내역을 정리한 후 성격별, 주요 사업별로 분류해 작년과 비교하여 예산을 분석하였다.

### 2019년 17곳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규모

표2는 2019년도 17곳의 각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과 1인당 장애인 정책예산을 정리한 한 표다. 2019년 17곳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은 총 4조 9,547억 원이다. 이 중 국비로 책정된 예산은 총 2조 9,260억 원으로 약 59.0%, 시·도 자체 예산은 총 2조 286억 원으로 약 41.0%를 차지하고 있다. 17곳 광역시·도 중 예산을 가장 많이 반영한 곳은 서울 1조 658억 원, 경기 6,977억 원이며, 가장 적은

**표2 2019년 17곳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규모** (단위: 천 원)

광역 시도	전체 예산 총액	장애인 정책 예산			예산 반영 비율	장애인 인구수*	1인당 장애인 예산(원)
		장애인정책 예산총액	국비	시·도비			
서울	35,741,608,367	1,065,832,292	332,173,031	733,659,261	3.0%	391,753	2,720,674
부산	11,666,118,934	376,883,200	194,625,021	182,258,179	3.2%	171,384	2,199,057
대구	8,331,570,000	299,268,890	156,912,405	142,356,485	3.6%	119,766	2,498,780
인천	10,110,471,088	254,869,801	153,364,266	101,505,535	2.5%	138,304	1,842,823
광주	5,083,001,023	232,789,380	177,036,780	55,752,600	4.6%	69,233	3,362,405
대전	4,753,894,000	235,159,972	113,818,407	121,341,565	4.9%	72,180	3,257,966
울산	3,600,332,954	137,523,722	68,671,077	68,852,645	3.8%	50,205	2,739,244
세종	1,551,612,540	33,082,450	15,178,323	17,904,127	2.1%	10,623	3,114,229
경기	24,373,139,429	697,781,890	549,648,031	148,133,859	2.9%	533,259	1,308,523
강원	5,229,691,000	146,719,109	114,023,487	32,695,622	2.8%	99,959	1,467,793
충북	4,578,890,316	154,331,863	120,211,902	34,119,961	3.4%	95,844	1,610,240
충남	6,269,423,000	206,900,618	154,824,911	52,075,707	3.3%	128,503	1,610,084
전북	6,224,149,248	206,901,159	156,440,721	50,460,438	3.3%	131,303	1,575,753
전남	7,369,127,945	193,071,394	148,188,185	44,883,209	2.6%	142,174	1,357,994
경북	8,645,620,000	247,890,637	190,943,696	56,946,941	2.9%	172,533	1,436,772
경남	8,256,678,586	288,995,793	214,426,363	74,569,430	3.5%	183,510	1,574,823
제주	5,285,111,397	176,734,454	65,601,272	111,133,182	3.3%	35,104	5,034,596
합계	157,070,439,827	4,954,736,624	2,926,087,878	2,028,648,746	3.2%	2,545,637	1,946,364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장애인 인구 현황)

예산을 반영한 곳은 세종이 330억 원, 울산이 1,375억 원이다.

2019년도 17곳의 각 광역시·도 전체 예산 총액 157조 원 중에 약 3.2%가 장애인 정책 예산에 해당된다. 장애인 정책 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이 약 4.9%이다. 그 다음으로 광주가 4.6%의 비율을 보였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이 2.1%, 인천 2.5%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장애인 인구 현황에 따르면 17곳 광역시·도 총 장애인 인구수 2,545,637명이다. 조사결과 1인당 장애인 예산은 1,946,364원이다. 제주가 5,034,596원으로 1인당 장애인 예산이 가장 많았고, 광주가 3,362,405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와 전남이 각 1,308,523원, 1,357,994원으로 가장 적었다.

예산 총액만 놓고 보면 장애인 정책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된 곳은 서울인데 전체 예산 대비 반영 비율은 대전보다 낮고, 1인당 장애인 예산도 세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 2019년 17곳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증가율 추이 분석**

표3은 17곳의 각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가 추이를 정리한 표다.

**표3 2018년 ~ 2019년 17곳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가율** (단위: 천 원)

광역시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증감액	증가율
서울	950,762,257	1,065,832,292	△ 115,070,035	△ 12.1%
부산	342,334,510	376,883,200	△ 34,548,690	△ 10.1%
대구	272,730,008	299,268,890	△ 26,538,882	△ 9.7%
인천	216,520,484	254,869,801	△ 38,349,317	△ 17.7%
광주	210,003,209	232,789,380	△ 22,786,171	△ 10.9%
대전	199,362,492	235,159,972	△ 35,797,480	△ 18.0%
울산	96,502,580	137,523,722	△ 41,021,142	△ 42.5%
세종	27,437,297	33,082,450	△ 5,645,153	△ 20.6%
경기	575,919,635	697,781,890	△ 121,862,255	△ 21.2%
강원	120,877,390	146,719,109	△ 25,841,719	△ 21.4%
충북	138,145,685	154,331,863	△ 16,186,178	△ 11.7%
충남	205,569,481	206,900,618	△ 1,331,137	△ 0.6%
전북	175,431,663	206,901,159	△ 31,469,496	△ 17.9%
전남	167,725,242	193,071,394	△ 25,346,152	△ 15.1%
경북	210,595,897	247,890,637	△ 37,294,740	△ 17.7%
경남	218,301,405	288,995,793	△ 70,694,388	△ 32.4%
제주	153,458,298	176,734,454	△ 23,276,156	△ 15.2%
합계	4,281,677,533	4,954,736,624	△ 673,059,091	△ 15.7%

2019년 17곳의 광역시·도 전체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은 4조 2,816억 원으로 작년 대비 6,730억원, 약 15.7%가 증가한 4조 9,547억 원이다. 경기도가 총 1,218억 원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이 총 1,150억 원이다. 반면, 작년 대비 예산 증가액이 적은 지역은 충남 13억 원, 세종 56억 원이다.

주요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증액을 살펴보면 전체 광역시·도 중에 서울특별시가 2018년, 2019년 2년 연속 가장 많은 장애인 정책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올해 2019년에 전국장애인체전을 서울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적은 예산 반영은 세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장애인 인구수가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이유다. 하지만 예산 증가율을 따지게 되면 서울은 12.1%, 세종은 20.6%로 세종이 서울보다 예산 증가율면에서는 높고, 앞서 분석한 1인당 장애인 예산도 서울보다 높다. 향후 세종시의 장애인 정책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년 대비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다. 410억 원으로 약 42.5%가 증가했다. 경남이 232억 원, 약 32.4%로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앞서 언급한 충남이 13억 원, 약 0.6%가 증가했으며, 이어서 대구가 265억 원, 약 9.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7곳의 광역시·도의 장애인 정책 예산 내역들을 분석한 결과, 예산 총액만 다를 뿐 세부 내역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17곳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성격 분석

센터는 장애인예산의 질적 분석을 위해 예산의 사업 명을 기준으로 성격별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아래 표4는 분류 기준이다.

번호	분류	주요 사업
1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장애인의 소득 보전에 관한 사업(현금급여 포함)</li> <li>사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 무상보육료, 자녀학비지원, 난방비지원, 장애아입양 양육비, 장애아 특수보육(보조교사), 장애청소년, 장애아보육시설</li> </ul>

2	의료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장애인의 의료비 등 경감 또는 면제 관련 사업</li> <li>사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가족지원(장애아재활치료, 언어발달치료), 보장구구입, 장애인등록진단비,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구강보건, 정신보건, 한센인, 정신질환, 보장구 수리, 보조공학센터, 의료재활시설(재활병원), 보조기구, 한센시설생계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난청진단, 장애등급심사제도, 응급안전서비스</li> </ul>	
3	자립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사업(여성장애인 사업도 포함)</li> <li>사례: 자립생활센터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자립정착금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여성사회활동참여, 장애여성출산지원금, 체험휴, 자립휴, 탈시설 지원, 활동지원, 가정폭력피해 장애여성 보호, 상담</li> </ul>	
4	장애인 시설	4-1 거주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장애인이 외부와 고립된 채 생활하는 시설 관련 사업</li> <li>사례: 장기거주시설, 개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 종사자 수당, 입소자생활보장, 입소자살비지원, 개인운영거주시설</li> </ul>
		4-2 지역 사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관련 사업</li> <li>사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그룹휴, 장애인체육관, 각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수화통역센터, 재가장애인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재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li> </ul>
		4-3 직업 재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장애인의 직업 개발을 위한 시설 관련 사업</li> <li>사례: 장애인자립작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재활훈련, 장애인생산품 판매 등 각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근로작업장</li> </ul>
5	고용,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직업재활기금 사업을 제외한 장애인 고용 및 취업관련 사업</li> <li>사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 시각안마사일자리, 요양보호사일자리, 장애인사회적일자리, 장애인기업지원, 기능경기 대회, 취업박람회</li> </ul>	
6	이동,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관련 사업</li> <li>사례: 장애인콜택시(특별운송),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승강기 리프트 설치, 편의지원센터, 장애인 운전연습,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장애인주차, 주거환경개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저상버스</li> </ul>	
7	문화, 체육,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요: 장애인 문화, 체육, 레저, 스포츠 활동과 정보접근 관련 사업</li> <li>사례: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문화예술제, 정보화지원, 장애인문화향유, 체육회지원, 생활체육, 장애인체전, 웹접근성, 점자도서관, 무료신문, 손말이음센터</li> </ul>	

8	기타 장애인 복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장애인 복지행정과 단체 지원 등 그 외 사업</li> <li>· 사례: 단체지원금, 장애인복지행정, 인식개선,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기금적립금, 성년후견인, 평생학습, 장애아부모심리상담, 장애아부모휴식지원, 인권증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li> </ul>
---	--------------	--

표5-1과 표5-2를 살펴보면 총액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2019년도 장애인 정책 예산 총 4조 9,547억 원 중 가장 많은 예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는 1조 2,716억 원의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이다. 자립생활 분야는 1조 2,630억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와 86억 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비슷한 수준의 예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보장 분야도 1조 1,557억 원으로 1조 원대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위 세 개 분야의 예산 총액을 합하면 총 3조 6,903억 원으로 2019년도 장애인 정책 예산의 7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대비 증가액으로 분석해보면 자립생활 분야 예산이 9,619억 원에서 약 3,011억 원 증가한 1조 2,630억 원으로 8가지 분야 예산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다. 이 같은 추이는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나 장애여성 예산 증가도 한몫했다. 반면에 장애인시설 분야 예산은 1조 2,536억 원에서 1조 2,716억 원으로 증가 약 180억 원 수준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앞서 예산 규모에서는 장애인시설 예산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증가액, 증가율로 접근하면 점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계의 탈시설 요구에 따른 정책의 변화로 보인다. 머지않아 자립생활 예산이 장애인시설 예산보다 규모면에서 조금씩 추월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가장 적은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1,361억 원의 문화·체육·정보 분야이다. 그 뒤를 이어 고용·취업 분야가 1,930억 원, 기타 장애인복지행정분야가 2,044억 원이다.

성격별 예산 반영 규모가 큰 곳만 살펴보면 소득보장의 경우, 서울이 188,618,693천원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경기도 182,728,541천원, 부산 100,829,421천원이다. 의료·재활 예산 역시 서울이 94,171,357천원으로 가장 많

다. 경기도가 45,653,813천원, 경남이 27,386,186천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자립생활 예산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순으로 각각 277,569,914천원, 229,994,167천원, 103,003,382천원, 78,739,925천원이었다. 장애인시설 예산의 경우에는 서울이 294,343,801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37,225,947천원, 부산이 86,976,579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5-2를 보면 고용·취업 예산은 경기도 24,214,116천원, 서울 24,135,814천원, 부산 18,239,457천원 순이다. 이동·편의 예산은 서울이 136,094,114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기가 27,687,006천원, 제주 24,572,954천원 순이다. 문화·체육·정보 예산은 서울이 24,348,230천원, 이어서 경기가 14,130,026천원, 경남이 8,648,060천원 순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장애인 복지행정 예산은 경기가 36,148,27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6,550,369천원, 경남이 24,224,84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5-1 2018년 ~ 2019년 17곳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증감률

(단위: 천 원)

지역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생활		장애인복지시설	
서울	'18년	159,591,501	'18년	95,864,712	'18년	235,132,816	'18년	273,942,129
	'19년	188,618,693	'19년	94,171,357	'19년	277,569,914	'19년	294,343,801
부산	'18년	87,961,366	'18년	29,423,440	'18년	89,852,800	'18년	91,722,254
	'19년	100,829,421	'19년	22,692,303	'19년	103,003,382	'19년	86,976,579
대구	'18년	63,204,406	'18년	18,588,596	'18년	63,656,060	'18년	79,236,046
	'19년	70,157,079	'19년	22,616,316	'19년	77,152,513	'19년	74,997,977
인천	'18년	53,285,559	'18년	15,110,623	'18년	57,440,933	'18년	55,105,680
	'19년	61,064,933	'19년	17,404,851	'19년	72,263,196	'19년	56,796,632
광주	'18년	46,187,394	'18년	20,486,753	'18년	47,934,210	'18년	66,177,487
	'19년	50,029,969	'19년	18,964,247	'19년	58,462,284	'19년	64,790,908
대전	'18년	35,964,421	'18년	9,058,805	'18년	46,943,874	'18년	79,914,935
	'19년	42,744,159	'19년	24,468,365	'19년	58,651,376	'19년	67,426,799
울산	'18년	21,125,395	'18년	5,504,640	'18년	15,191,193	'18년	37,690,469
	'19년	23,249,374	'19년	8,937,512	'19년	27,541,447	'19년	54,896,425
세종	'18년	4,279,334	'18년	2,351,524	'18년	3,571,130	'18년	10,496,728
	'19년	5,112,781	'19년	4,466,956	'19년	6,465,358	'19년	9,155,715

경기	'18년	155,369,970	△	'18년	48,989,381	▼	'18년	158,503,138	△	'18년	143,436,709	▼
	'19년	182,728,541	17.6%	'19년	45,653,813	6.8%	'19년	229,994,167	45.1%	'19년	137,225,947	4.3%
강원	'18년	37,125,394	△	'18년	10,447,598	△	'18년	19,720,459	△	'18년	35,168,295	△
	'19년	40,873,114	10.1%	'19년	13,375,421	28.0%	'19년	30,884,966	56.6%	'19년	41,381,565	17.7%
충북	'18년	37,269,827	△	'18년	9,816,327	△	'18년	25,095,172	△	'18년	48,234,383	▼
	'19년	41,426,588	11.2%	'19년	11,651,738	18.7%	'19년	33,282,984	32.6%	'19년	45,525,084	5.6%
충남	'18년	48,305,690	△	'18년	47,019,859	▼	'18년	33,932,837	△	'18년	59,930,680	△
	'19년	53,668,444	11.1%	'19년	15,932,482	66.1%	'19년	48,907,964	44.1%	'19년	66,523,896	11.0%
전북	'18년	55,791,092	△	'18년	14,132,290	△	'18년	29,258,249	△	'18년	54,216,569	△
	'19년	61,449,509	10.1%	'19년	21,481,500	52.0%	'19년	41,187,602	40.8%	'19년	58,274,335	7.5%
전남	'18년	61,713,340	△	'18년	13,384,300	△	'18년	35,097,058	△	'18년	36,513,480	△
	'19년	64,318,151	4.2%	'19년	21,332,280	59.4%	'19년	45,929,069	30.9%	'19년	38,011,030	4.1%
경북	'18년	65,755,299	△	'18년	15,777,496	△	'18년	33,512,971	△	'18년	72,216,339	▼
	'19년	74,511,030	13.3%	'19년	19,280,398	22.2%	'19년	49,427,904	47.5%	'19년	67,839,788	6.1%
경남	'18년	66,122,564	△	'18년	24,057,157	△	'18년	51,233,828	△	'18년	53,644,506	▼
	'19년	73,346,989	10.9%	'19년	27,386,186	13.8%	'19년	78,739,925	53.7%	'19년	51,609,052	3.8%
제주	'18년	21,569,949	△	'18년	12,116,975	△	'18년	15,891,050	△	'18년	56,037,386	▼
	'19년	21,574,238	0.02%	'19년	15,763,981	30.1%	'19년	23,623,270	48.7%	'19년	55,900,120	0.2%
합계	'18년	1,020,622,501	△	'18년	392,130,476	△	'18년	961,967,778	△	'18년	1,253,684,075	△
	'19년	1,155,703,013	13.2%	'19년	405,579,706	3.4%	'19년	1,263,087,321	31.3%	'19년	1,271,675,653	1.4%

세종	'18년	818,092	△	'18년	2,302,713	△	'18년	1,670,375	▼	'18년	1,947,401	△
	'19년	1,085,453	32.7%	'19년	2,549,446	10.7%	'19년	1,639,415	1.9%	'19년	2,607,326	33.9%
경기	'18년	19,872,123	△	'18년	23,083,236	△	'18년	14,076,703	△	'18년	12,588,375	△
	'19년	24,214,116	21.8%	'19년	27,687,006	19.9%	'19년	14,130,026	0.4%	'19년	36,148,274	187.2%
강원	'18년	4,906,168	△	'18년	6,203,386	▼	'18년	5,220,393	△	'18년	2,085,697	△
	'19년	6,146,639	25.3%	'19년	5,715,305	7.9%	'19년	5,397,222	3.4%	'19년	2,944,877	41.2%
충북	'18년	5,700,740	△	'18년	1,610,923	▼	'18년	8,011,059	▼	'18년	2,407,254	△
	'19년	7,465,900	31.0%	'19년	1,472,078	8.6%	'19년	6,940,534	13.4%	'19년	6,566,957	172.8%
충남	'18년	6,825,153	△	'18년	1,185,523	△	'18년	4,680,405	△	'18년	3,689,334	△
	'19년	8,820,185	29.2%	'19년	2,251,123	89.9%	'19년	7,002,987	49.6%	'19년	3,793,537	2.8%
전북	'18년	7,342,685	△	'18년	4,251,035	△	'18년	8,576,764	▼	'18년	1,862,979	△
	'19년	9,643,410	31.3%	'19년	5,630,705	32.5%	'19년	5,701,785	33.5%	'19년	3,532,313	89.6%
전남	'18년	9,994,705	△	'18년	3,835,587	▼	'18년	5,223,553	△	'18년	1,963,219	△
	'19년	10,926,969	9.3%	'19년	3,385,993	11.7%	'19년	5,723,010	9.6%	'19년	3,444,892	75.5%
경북	'18년	9,323,324	△	'18년	3,789,698	▼	'18년	4,575,232	△	'18년	5,645,538	△
	'19년	11,823,851	26.8%	'19년	3,616,638	4.6%	'19년	5,459,169	19.3%	'19년	15,931,859	182.2%
경남	'18년	10,185,798	△	'18년	3,747,431	△	'18년	4,807,038	△	'18년	4,503,083	△
	'19년	12,740,102	25.1%	'19년	12,300,631	228.2%	'19년	8,648,060	79.9%	'19년	24,224,848	438.0%
제주	'18년	8,857,925	△	'18년	22,560,619	△	'18년	7,337,679	△	'18년	9,086,715	△
	'19년	11,456,566	29.3%	'19년	24,572,954	8.9%	'19년	7,896,414	7.6%	'19년	15,946,911	75.5%
합계	'18년	152,536,499	△	'18년	275,977,982	△	'18년	118,364,893	△	'18년	106,393,329	△
	'19년	193,051,765	26.6%	'19년	325,071,944	17.8%	'19년	136,105,795	15.0%	'19년	204,461,427	92.2%

표5-2 2018년 ~ 2019년 17곳 광역시도별 장애인 정책 예산 성격분류 증감률

(단위: 천 원)

지역	고용, 취업		이동, 편의		문화, 체육, 정보		기타 장애인 복지행정					
서울	'18년	17,969,353	△	'18년	127,206,427	△	'18년	20,965,458	△	'18년	20,089,861	△
	'19년	24,135,814	34.3%	'19년	136,094,114	7.0%	'19년	24,348,230	16.1%	'19년	26,550,369	32.2%
부산	'18년	13,797,838	△	'18년	18,590,158	△	'18년	7,110,256	△	'18년	3,876,398	△
	'19년	18,239,457	32.2%	'19년	19,345,800	4.1%	'19년	7,714,523	8.5%	'19년	18,081,735	366.5%
대구	'18년	10,567,413	△	'18년	11,775,293	△	'18년	7,517,892	▼	'18년	18,184,302	▼
	'19년	13,256,830	25.5%	'19년	23,851,756	102.6%	'19년	6,462,940	14.0%	'19년	10,773,479	40.8%
인천	'18년	5,874,241	△	'18년	16,292,579	△	'18년	4,275,018	△	'18년	9,135,851	△
	'19년	7,096,497	20.8%	'19년	21,279,174	30.6%	'19년	7,965,153	86.3%	'19년	10,999,365	20.4%
광주	'18년	7,371,295	△	'18년	12,703,722	△	'18년	7,048,257	▼	'18년	2,094,091	△
	'19년	9,368,392	27.1%	'19년	14,657,917	15.4%	'19년	6,548,080	7.1%	'19년	9,967,583	376.0%
대전	'18년	8,026,937	△	'18년	11,433,758	△	'18년	4,768,019	△	'18년	3,251,743	△
	'19년	10,752,883	34.0%	'19년	14,919,133	30.5%	'19년	8,000,672	67.8%	'19년	8,196,585	152.1%
울산	'18년	5,102,709	△	'18년	5,405,894	△	'18년	2,500,792	△	'18년	3,981,488	△
	'19년	5,878,701	15.2%	'19년	5,742,171	6.2%	'19년	6,527,575	161.0%	'19년	4,750,517	19.3%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타 장애인 복지행정' 예산으로 92.2%의 증가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자립생활 예산 31.3%, 고용·취업 예산 26.6%, 이동·편의 예산 17.8%, 문화·체육·정보 예산 15.0%, 소득보장 예산 13.2%, 의료·재활 예산 3.4%, 장애인시설 예산 1.4% 순이다.

성격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소득보장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 19.5%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대전이 각 18.9%로 뒤를 잇고 있다. 소득보장 예산은 매년 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으며 고정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이다.

의료·재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이 170.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세종이 90.0%, 울산이 62.4% 순이다. 대전의 경우, 정신장애인 대

상으로 한 정신건강 의료지원 예산과 의료재활시설 설립 및 운영 예산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반대로 충남은 작년 대비 66.1% 감소하였는데, 정신건강 의료지원 예산과 의료재활시설 설립, 운영 예산이 동결이거나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이 원인이었다.

자립생활 예산은 울산이 81.3%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서 세종 81.0%, 경남 53.7% 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장애인시설 예산은 울산이 45.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 17.7%, 충남 11.0% 순이다. 증가 원인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증가와 기존의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운영 예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예산의 고정적인 증가에 있다. 앞서 장애인시설 예산이 8가지 성격분야 중에 가장 낮은 1.4% 증가율을 보인 이유는, 울산, 강원, 충남을 제외한 14곳의 광역시·도는 대체적으로 8%이하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13% 내로 감소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취업·고용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34.3%)이다. 대전이 34.0% 서울과 0.3%차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도 32.7%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광역시·도별로 이양되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매년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서울, 대전은 광역 시도 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과 장애인 창업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있었다.

이동·편의 예산 증가율은 경남이 228.2%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대구 102.6%, 충남이 89.9% 순이다. 경남의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용과 노후 장애인콜택시 교체 지원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반면 전남을 비롯한 충북, 강원, 경북은 각각 11.7%, 8.6%, 7.9%, 4.6%으로 예산 감소율을 보였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예산과 특수교통이동수단(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용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문화·체육·정보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61.0%로 울산이다. 다음으로 인

천 86.3%, 경남 79.9% 순이다. 울산의 경우, 세 곳의 체육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장애인 복지행정' 예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가지 성격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남이 438.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광주가 376.0%, 부산이 366.5% 순이다. 장애인단체 지원 확대와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17곳 광역시도별 주요 장애인 사업 예산 분석

지난 수년간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업, 장애인 특별이동수단 운영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 을 따로 분석해보았다. 표6은 17곳 광역 시도 해당 사업 예산 증가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6 2018년 ~ 2019년 17곳 광역시도별 주요 장애인 사업 예산 증감률**  
(단위: 천 원)

광역 시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업			장애인 특별이동수단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서울	'18년	221,151,642	△	'18년	8,651,900	△	'18년	100,056,351	△	'18년	8,323,852	△
	'19년	258,904,065	17.1%	'19년	11,884,687	37.4%	'19년	105,299,258	5.2%	'19년	16,307,069	95.9%
부산	'18년	87,673,209	△	'18년	1,927,470	△	'18년	17,528,971	△	'18년	8,663,533	△
	'19년	100,580,612	14.7%	'19년	2,170,220	12.6%	'19년	17,599,410	0.4%	'19년	14,090,331	62.6%
대구	'18년	58,498,961	△	'18년	4,630,978	▼	'18년	9,931,111	△	'18년	9,365,429	△
	'19년	72,801,613	24.4%	'19년	3,147,350	32.0%	'19년	22,267,506	124.2%	'19년	10,910,440	16.5%
인천	'18년	55,820,181	△	'18년	1,273,376	△	'18년	14,684,522	△	'18년	6,406,031	△
	'19년	69,798,552	25.0%	'19년	1,625,526	27.7%	'19년	18,220,434	24.1%	'19년	8,463,573	32.1%
광주	'18년	46,557,709	△	'18년	1,138,380	△	'18년	11,380,260	△	'18년	7,140,899	△
	'19년	56,938,354	22.3%	'19년	1,338,380	17.6%	'19년	13,250,544	16.4%	'19년	8,379,086	17.3%
대전	'18년	45,758,904	△	'18년	672,035	△	'18년	10,634,998	△	'18년	5,181,093	△
	'19년	57,061,588	24.7%	'19년	779,810	16.0%	'19년	13,626,521	28.1%	'19년	7,484,579	44.5%
울산	'18년	14,739,877	△	'18년	223,345	△	'18년	4,945,540	△	'18년	2,706,952	△
	'19년	27,005,981	83.2%	'19년	303,345	35.8%	'19년	5,730,771	15.9%	'19년	3,502,448	29.4%
세종	'18년	3,173,794	△	'18년	335,745	▼	'18년	2,083,063	△	'18년	827,001	△
	'19년	6,062,807	91.0%	'19년	285,345	15.0%	'19년	2,350,360	12.8%	'19년	1,810,597	118.9%

경기	'18년	155,065,127	△	'18년	2,449,895	△	'18년	18,873,950	△	'18년	21,774,910	△
	'19년	226,429,859	46.0%	'19년	2,766,389	12.9%	'19년	22,329,556	18.3%	'19년	29,820,260	36.9%
강원	'18년	18,786,268	△	'18년	330,217	△	'18년	5,225,000	▼	'18년	3,103,976	△
	'19년	30,050,567	60.0%	'19년	658,033	99.3%	'19년	4,364,552	16.5%	'19년	4,699,075	51.4%
충북	'18년	24,231,703	△	'18년	259,000	△	'18년	1,045,866	△	'18년	3,148,441	△
	'19년	32,435,371	33.9%	'19년	543,017	109.7%	'19년	1,154,808	10.4%	'19년	4,796,729	52.4%
충남	'18년	32,830,906	△	'18년	878,760	▼	'18년	365,889	△	'18년	3,866,338	△
	'19년	47,732,635	45.4%	'19년	410,190	53.3%	'19년	1,025,832	180.4%	'19년	5,660,588	46.4%
전북	'18년	28,628,272	△	'18년	414,322	△	'18년	3,004,736	△	'18년	5,214,018	△
	'19년	40,602,732	41.8%	'19년	421,999	1.9%	'19년	4,550,371	51.4%	'19년	7,214,920	38.4%
전남	'18년	33,989,293	△	'18년	717,299	△	'18년	1,556,587	△	'18년	5,600,601	△
	'19년	44,525,787	31.0%	'19년	857,063	19.5%	'19년	2,384,643	53.2%	'19년	7,051,544	25.9%
경북	'18년	31,805,223	△	'18년	205,880	▼	'18년	2,331,138	△	'18년	6,585,333	△
	'19년	48,879,509	53.7%	'19년	180,000	12.6%	'19년	2,344,638	0.6%	'19년	8,653,418	31.4%
경남	'18년	46,292,687	△	'18년	1,336,165	▼	'18년	2,458,600	△	'18년	7,718,504	△
	'19년	73,023,285	57.7%	'19년	1,239,986	7.2%	'19년	11,200,502	355.6%	'19년	9,776,675	26.7%
제주	'18년	14,824,574	△	'18년	465,670	▼	'18년	10,224,908	▼	'18년	6,112,422	△
	'19년	22,255,900	50.1%	'19년	462,220	0.7%	'19년	9,621,439	5.9%	'19년	11,168,389	82.7%
합계	'18년	919,828,330	△	'18년	25,910,437	△	'18년	216,331,490	△	'18년	111,739,333	△
	'19년	1,215,089,217	32.1%	'19년	29,073,560	12.2%	'19년	257,321,145	18.9%	'19년	159,789,721	43.0%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활동보조인 급여와 가산급여, 추가시간 지원, 중개기관 위탁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이다. 중증장애인들의 투쟁 결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7년 4월 보건복지부가 처음 도입했던 사업이다. 장애인들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예산 확대 요구를 해 온 지 12년이 흘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장애인 정책 예산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들어서는 중앙정부 예산과 17곳 광역시·도 내 자체 예산을 합산하여 1조 2,150억 원의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앞서 네 가지 주요 장애인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다. 작년 대비 32.1%가 증가한 셈이다. 예산규모는 서울이 258,904,065천원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경기 226,429,859천원, 부산 100,580,612천원 순이다. 세종은 6,062,807천원으로 17곳의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예산 규모다. 하지만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에서는 91.0%로 가장 높다. 울산, 강원도 각각 83.2%, 60.0%로 작년 대비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경기, 대전, 인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예산을 따로 추가 반영하고 있어서 눈여겨 볼만하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사업은 센터 운영 사업과 자립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광역시·도가 처음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역별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센터의 운영 규모와 사업 역량에 따라 국비, 시비 센터로 나누어져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고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산이다.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예산은 29,073,560천원으로 작년 대비 12.2%가 증가했다. 17곳의 광역시·도 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사업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11,884,687천원이다. 뒤를 이어 대구 3,147,350천원, 경기 2,766,389천원 순이다.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경북으로 180,000천원이다. 경북 내에서는 1곳만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에서는 충북이 109.7%로 가장 높다. 강원, 서울도 각각 99.3%, 37.4%로 작년 대비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충남이 작년 대비 53.3% 예산 감소율을 보였고, 대구와 세종도 각각 32.0%, 15.0% 예산이 감소하였다. 광역시·도 자체 예산에서 추가로 반영된 센터 운영 사업비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 추측한다.

장애인 특별이동수단 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노후차량 교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된 예산이다. 2019년 장애인 특별이동수단 지원 사업예산은 257,321,145천원으로 작년 대비 18.9%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작년 대비 5.2%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105,299,258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뒤를 이어 경기 22,329,556천원, 대구 22,267,506천원 순이다. 충남은 1,025,832천원으로 17곳의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예산 규모이지만,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에서는 18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남은 355.5%로 압도적인 예산 증가율을 보였고, 대구도 124.4%로 작년 대비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 경남, 대구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 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노후차량 교체 예산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반대로 강원은 16.5%, 제주는 5.9%의 예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서울은 특별하게 일반 노선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구입, 개조 비용 예산으로 890,000천원을 책정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고, 올해 장애인 관광 목적의 단체이용 전세버스 한 대로 시작해 2023년까지 차량 10대 운영계



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타 광역시·도가 눈여겨볼만한 예산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의 휴식 및 상담 지원, 주간 활동지원, 평생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이 포함된 예산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86억 원이었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2019년에 400% 가까이 증가한 427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를 위해 대중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 17곳의 광역시·도의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159,789,721천원으로 작년 대비 43.0%가 증가했다. 앞서 네 가지 주요 장애인 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경기도가 29,820,260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 규모를 보였고, 서울이 16,307,069천원, 부산이 14,090,331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1,810,597천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 규모이지만,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에서는 118.9%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제주 또한 각각 95.9%, 82.7%로 작년 대비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17곳의 광역시·도 전반적으로 예산규모나 증가율이 높아진 원인은 올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사업,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것이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와 광역시·도에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지원, 돌봄서비스의 데이서비스(Day service)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 책임을 분담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이상으로 2019년 17곳의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예산의 규모, 성격, 주요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장애계의 요구와 정책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지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지난 2018년 4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나타난 장애인의 요구는 1순위가 소득보장, 2순위 의료비 지원, 3순위 고용지원, 4순위 주거지원, 5순위 이동권 지원이었다. 2019년 광역지자체 장애인 정책 예산 편성 현황과 분야별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의 실태조사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소득, 의료, 고용, 건강, 주거, 이동권 보장)

에 장애인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2019년 17곳의 광역시·도 전체 예산 총액에서 장애인 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작년에 비해 0.1% 증가 하는 데 그쳤다.

성격분류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는 장애인복지 시설 예산으로 1조 2,716억 원이다. 자립생활 예산도 1조 2,630억 원으로 장애인복지 시설 분야와 86억 원 차이 밖에 나지 않은 비슷한 수준의 예산 규모다. 장애계의 탈시설 요구의 성과로, 자립생활 예산이 장애인시설 분야보다 예산규모면에서 조금씩 추월할 것으로 추측한다. 소득보장 분야도 1조 1,557억 원으로 1조원 대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주요 장애인 사업을 종합적으로 접근해보면, 예산규모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2150조원, 장애인 특별이동지원 사업 257,321,145천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159,789,721천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 29,073,560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대비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 및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포함된 자립생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탈시설 정책의 영향으로 장애인시설 예산이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17곳의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 예산 내역들을 분석해보면 예산 총액만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 예산 규모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정자립도와 지역적 특성과 장애인 인구수, 시·도민들의 장애인식정도, 장애감수성을 고려한 새롭고, 개성 있는 장애인 정책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로 폐지를 이후로 장애인 정책 예산 확대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계와 협력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직접지불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강화와 같은 사람중심의 정책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FUND

## 사람에게 제도를 맞추는 개인맞춤형 예산 정책 방향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정부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단순한 장애등급 폐지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정리하면 의료적 개념에 바탕을 둔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장애측정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조사를 도입,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할당기준이 바뀌면 전달체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급여(또는 서비스), 재원에 대한 변화도 함께 도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정책을 보면 할당기준 변화에 따른 전달체계 변화까지만 나와 있고, 정작 중요한 급여와 재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 장애등급제 개편의 의미

정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려는 것은 장애인에게 무엇인가 지원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몇 가지 경제적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장애인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장애인들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더 정의롭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88년부터 장애등급제를 시행하였다.

이때,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측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등급제를 만들면서 현재까지 의료적 장애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장애를 개념 짓는 것이다. 사지(四肢)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이 있으면 지체장애가 되는 것이고, 귀의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청각장애가 되는 것이다. 지적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장애가 된다.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두 다리의 기능이 다 없는 사람이 한 다리의 기능이 손실된 사람보다 더 많은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도 철저하게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정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6개로 구분 짓던 등급을 올해 7월부터 2개 등급으로 개편했다. 또 향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만 구분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새롭게 종합조사 도구를 만들었고, 이 조사도구를 적용하는 정책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즉 의료적으로 장애정도를 구분하던 것에서 종합조사 도구에 의해 장애정도를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등급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등급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7월부터 사용 중인 종합조사 도구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새로운 종합조사 도구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지원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즉 주로 일상생활동작(ADL)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척도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의료적 장애등급에서 사회 기능적 장애등급으로 변한 것이다.

사회적 기능으로 장애를 바라본다는 것은 장애인을 단순히 손상에 따른 치료 또는 적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서구도 이미 1980년대부터 의료적 장애 개념을 버리고, 사회적 기능 장애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 사회적 모델의 영향에 따라 정치사회적 장애 개념, 즉 사회가 손상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차별, 배제, 억압을 장애로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 기능 장애 개념과 정치 사회적 장애 개념까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서구의 장애인제도는 사회 환경 개선, 차별철폐 등에 보다 강조점이 찍히게 되었다.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손상의 정도에 따라 지원의 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하는지, 주변 환경이 어떤지 등을 측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7월부터 종합조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적 기능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현재 사회적 기능 중 무엇이 얼마나 잘 안되는지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조사 도구가 이상적일 수는 없으며, 향후 사회적 기능 제한 접근법과 정치 사회적 접근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후 자격기준 측정방식의 의미에 맞추어 급여의 내용 및 전달방식이 조금 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우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다 더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급여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등 현재 정책의 확장 과 더불어 편의시설의 개념을 발달장애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 관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거주관리서비스(house management service), 지역사회 활동·사회 활동·경제 활동·일상생활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이동 지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시민옹호 서비스,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집 개조 설계 및 건축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를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도 진입 초기에 한번 정해진 서비스의 양을 매달마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학습도우미 제공을 받는 경우, 매달 동일한 활동보조와 학습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기 보다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매월 두 서비스 지원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매월 동일한 지원을 받는 제도에서, 월별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지원의 양은 달라지지만 일 년 간 지원의 양은 동일하게 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또 2-3 서비스의 총량을 합쳐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정부가 밝힌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서비스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방식에서, 개인맞춤형 예산으로 편성이 바뀔 필요가 있다.

### 개인맞춤형 예산 편성의 방향

개인맞춤형 예산이란 제도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제도를 맞추는 것이다. 즉 제도별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몇 개의 서비스를 합쳐,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서비스 총량을 제공하고, 총량에 맞춰 개인이 사용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집행 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상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라 부른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도는 사회혁신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복지체계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복지 수혜자가 아닌 복지 소비자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문화 또는 복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보다 국가복지체계에 의한 '재분배 정의'에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의'로의 변화가 우선이다.

시민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집합적 재분배(collective redistribution)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추구를 하였다면, 앞으로는 개별유연화에 따라 재분배 정책과 더불어 개인적 인정(individual recognition)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경우 개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게 되고, 시민이 자신의 선택과 통제권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지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방식의 복지실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공급방식은 공급자 중심체계(재정이 공급자에게 전달되고 공급자가 일정 기준에 맞는 수요자를 선별함)에서 수요자 중심체계(재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요자에게 전달되고 수요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함)로 바뀌어야 한

다. 재정운영방식은 현재와 같은 항목별 예산 방식(예, 활동지원제도 예산, 장애인 복지관 예산, 거주시설 예산 등 서비스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방식)에서 몇 개의 장애인서비스 예산 또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 전부를 하나의 예산으로 합치는 예산 방식(예,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금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목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간 유연한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몇 개 항목의 예산을 하나로 합쳐 기금으로 전환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NDIS는 201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 7월 서호주 주를 제외한 호주 전역에서 도입되었다. 서호주 주에는 2017년 7월에 도입되었다. NDIS의 재정은 '기존 장애인 서비스 지원비용(중앙정부 및 주정부) + 건강보험료 상승분(장애돌봄 호주기금) + 중앙정부의 재원(일반조세, 국가채무)'로 구성된다.

즉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을 하나로 합치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추가하였으며,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상승분으로 채웠다. 건강보험 보험료는 과세소득에 1.5%를 부과하던 것에서 2.0%를 부과함에 따라 0.5% 상승된 금액으로 충당한다. 이와 같은 재원들은 NDIS 지출 목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장애돌봄 호주기금(DisabilityCare Australia Fund)'으로 모이게 된다. 건강보험의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insur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기금(fund)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의료 개념에 바탕을 둔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등급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정부정책의 장애 개념은 의료적 개념에서 사회적 기능 개념 및 정치사회적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로 장애인복지 40년 역사의 큰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개념에 바탕을 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개혁의 시작이다. 정책에 반영된 장애개념의 변화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과 재난, 그리고 안전

## 예방·준비·피난 매뉴얼의 혼재 ‘몸이 기억하는’ 시스템 필요

이정수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격받아 건물이 붕괴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희생자를 여러 명의 시민이 부축하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들어 피난시켰다. 재난 시 행동요령을 잘 보여주었던 사례다. 사실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없는 사회는 없다. 재난이나 사건·사고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나는 아닐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다.

### 재난과 안전 취약계층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다음 날 한겨레신문 1면에는 “국가관리 총체적 붕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다음 해인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동아일보는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세월호 참사 당시 JTBC(2015.6.29.)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면서, “재난구조 신속 대응할 시스템 필요”를 제시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다. 국가나 사회가 선진화하고 풍요로워 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의식은 미흡하고 재난대응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은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있어 ‘안전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정의하고, 안전관리 강화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피난계획 수립·시행에서는, “3.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재해약자)의 현황, 5.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등을 피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과 재난대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시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난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실제적 위기상황의 대응 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부족하여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제약 상황이 발생하며, 재난대응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높다. 즉, 장애인은 재난 시 의사소통, 이동, 의료적 보호 등 각 단계별로 추가적인 대응지원이 필요하다.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는데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피난 대응지침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비 및 피난에 관한 절차, 유의사항을 담은 매뉴얼이 「화재안전교육 표준매뉴얼」, 「장애인을 위한 생활 속의 안전」,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등의 형식으로 개발·공급되고 있지만, 예방 및 준비(prepared)와 피난 매뉴얼(action plan)이 혼재되어 있다. 최근 일부 장애유형별로 「보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난매뉴얼」이 제시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에서 장애유형(지체, 청각, 시각, 지적, 중증, 장애인·유아)별 장애인 피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일반적인 단계별 대응요령을 담고 있어,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시설별로 소방 및 민방위 훈련 등 피난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조차도 장애인 피난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피난훈련을 실시하는 사례는 미흡하다. 실례로 피난매뉴얼에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

정해 돕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수준이 전부다.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응전략

### 1. 건물 특성을 고려한 피난 매뉴얼 구축

장애인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는 긴급 상황 또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그리고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대비(prepared)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각 기관 및 시설에서는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 상황 및 재난에 대비한 피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이 주·야간에 주로 이용하는 관련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유형별 피난행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난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한 안전한 피난통로, 피난출구, 피난계단 및 피난안전구역 등을 제시하는 구체화된 피난 매뉴얼(action plan) 수립이 건축물별로 요구되고 있다.

### 2. 장애유형별 피난매뉴얼 구축

재난시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행동특성이 다르며, 또한 장애인을 안전하게 이동 및 피난시키기 위한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수준이나 유형을 쉽게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장애유형을 안내할 수 있는 인식표(tag)를 소지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라 행태특성(자폐, 지체, 시각, 청수 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른 행태)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리자 또는 도우미(buddy)가 장애인을 어떻게 피난시켜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담은 행동매뉴얼(action plan)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기관에서는 재난시 장애인

의 피난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buddy)를 지정하거나, 누구나 장애인의 피난을 장애유형별로 도와줄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행동특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

### 3. 정기적 피난훈련 및 교육

국민안전처 「방화규정」에서는 정기적으로 방화교육 및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 경보신호, 연락, 소화, 파괴, 대피, 구호, 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응급조치반 및 긴급연락처 구축 등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소방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교육과 피난훈련은 소화기사용 및 피난동선 체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방관이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장애인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키는 방법이나 대응을 제시하는 교육 및 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피난 보조도구, 도우미의 지원(buddy)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피난훈련을 통해 장애유형별 피난 대응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 유형별 자력 및 수직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데, 모든 재실자가 피난하였는지를 확인(Nobody Left Behind)하는 등 관리자의 행동요령을 담은 현장 지향형 피난 매뉴얼(action plan)이 필요하다.

‘안전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을 위한 피난계획 또는 재난대응시스템은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공감사회의 최소조건이며, 포괄적인 복지이다. 이러한 피난계획은 각 건축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대비(prepared) 매뉴얼로 부터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극적 대응요령을 담은 피난 매뉴얼(action plan)로 심층화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진 피난 매뉴얼도 캐비닛 속에만 보관된다면, 오래된 고장난 소화기나 다름없다.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가 함께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피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피난 매뉴얼을 숙지함으로써, “몸이 기억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퍼펙트맨〉 설정과 같은 영화들 장애와 계급, 하층보다 바닥으로 그려지다

류미레 다큐멘터리감독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떠들썩한 지금,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계급’이라는 말을 어느 때보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다른 누군가들에게는 저 세상 얘기로 들리니까요. 설경구, 조진웅 주연의 〈퍼펙트맨〉이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영화관에서 본 저는 관객이 그리 많지 않아서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는 일단 무조건 응원하거든요. 이번 호는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아 고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인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녹턴〉과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가 동시에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정신장애로 고통 받는 광대 아서 플렉의 〈조커〉도 좋았습니다. 즐거운 고민 끝에 〈퍼펙트맨〉을 고른 이유는 그 중 가장 대중적이라 많은 관객이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퍼펙트맨〉을 소개합니다.

### 다르면서도 비슷한 이야기

〈퍼펙트맨〉을 골랐을 때는 2011년 프랑스 최고 흥행작 〈언터처블:1%의 우정〉이 연상되었기에 당연히 리메이크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터처블:1%의 우정〉은 재벌가 장애인과 밑바닥 인생 흑인의 만남과 우정을 그린 영화지요. 박스오피스 10주 연속 1위, 세계 2100만 여명의 관객이 관람한 2011년 프랑스 최고의 흥행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되어 〈업사이드〉라는 이름으로 2019년 6월에 한국의 극장가를 찾았습니다. 〈업사이드〉 또한 전 세계 흥행 수익 4억 달러를 돌파하며 〈어벤저스: 엔드게임〉, 〈캡틴 마블〉과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들 사이에서 2019년 5월 기준, 2019년 북미 흥행 수익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퍼펙트맨〉이 개봉했습니다.



제작사는 〈퍼펙트맨〉과 〈언터처블:1%의 우정〉이 전혀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언터처블:1%의 우정〉의 드리스나 〈업사이드〉의 델, 그리고 〈퍼펙트맨〉의 영기가 모두 하층민인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의 두 영화의 주인공인 드리스나 델이 주로 상위 1%인 필립(두 영화 모두에서 부자의 이름은 필립입니다)과 지내는 시간이 많은 반면, 〈퍼펙트맨〉은 한탕을 꿈꾸는 건달 영기의 삶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덕분에 휴먼 코미디뿐 아니라 느와르까지 섞인 영화가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기에 판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퍼펙트맨〉 제작사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골랐던 이유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장애와 계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하나만은 여전히입니다.

〈퍼펙트맨〉 줄거리를 한 줄로 표현해보면, 인생을 위해 한탕을 꿈꾸는 건달 영기와 살 날이 두 달 밖에 안남은 로펌 대표 장수의 버킷리스트 실행기입니다. 조직 내 실세에서 밀려난 영기는 주식 투자를 위해 조직 보스의 7억 원을 빼돌렸다가 한 순간에 날아갑니다. 마침 로펌 대표 장수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조건으로 남은 시간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건달 영기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은 진짜 우정과 진정한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느와르가 섞이며 사뭇 다른 영화가 되긴 했지만 〈언터처블:1%의 우정〉, 〈업사이드〉, 〈퍼펙트맨〉 주인공들의 관계설정은 동일합니다. 중도장애를 갖게 되어서 절망한 상류층이 건강한 몸이 유일한 자산인 하층민과의 교감을 통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설정은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자주 나타나지요. 이번 호 영화들과는 다른 의미로요.

### 세상을 구원하는 장애

많은 경우 장애인들은 세파에 찌든 영혼을 구원하는 순수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제8요일〉이나 〈레인맨〉의 경우, 감동의 물결을 건너내고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형



식상으로는 투툽(두 명의 주인공)을 내세웠지만,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조지와 천재적인 자폐성 장애인 레이몬드의 파트너들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8요일>의 아리는 잘나가는 성공학 강사지만 가정의 파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레인맨>의 찰리는 거친 성격에 돈만 밝히는 비열한 인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가 끝나고 나면 비장애인 아리와 찰리는 보다 인간적으로 변해있습니다. 착한 장애인 주인공들이 세파에 찌들었거나 타락한 비장애인들을 순수한 영혼으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착하다’와 같은 단정과 ‘장애인은 위대하다’ 혹은 ‘장애인임에도 위대하다’는 오버 또한 영화나 드라마가 자주 다루는 고정관념입니다.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선택하는 비장애인들의 기대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비장애인들은 자신과는 ‘다른’ 장애인들을 봅니다. 장애인들은 다르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위대해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저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며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를 극복하는 인간승리의 전 과정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지켜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용기를 북돋워주는 건 사실이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세상에서 초인적인 노력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빛낸 장애인의 이야기는 위협하지요. 세상은 털끝만 큼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봐라, 저런 사람도 있는데 무슨 불평이냐?” 라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 절망에 빠진 부자가 변화하는 방식

어떤 사람이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언터처블:1%의 우정>, <업사이드>, <퍼펙트맨>의 이야기구조는 앞의 영화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장애인’ 자리에 ‘건강한 육체를 가진 하층민’이 있는 거죠. 드리스, 델, 영기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배려보다는 무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지가 영화 속 부자 주인공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은 경력이 있거나, 장애인권감수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영화 속

에서 따분하게 그려집니다. 영화 초반의 면접 장면에서도 그렇고, 하층민 주인공들이 떠난 후에 잠시 동안 부자 주인공들을 돌보는 활동보조인들의 면면에서 그 시선은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업사이드>의 한 장면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밤거리를 산책하던 필립과 델은 핫도그 가게에 들어갑니다. 점원은 델에게 메뉴를 물은 후, 바로 옆에 있는 필립에게가 아닌 델에게 “저 분은요?” 라고 묻습니다. 델은 점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데 필립은 나중에 이 대화를 상기시키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난 그런 취급 받거든. 본체만체 하다가 부자란 걸 알면 들러붙거나”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일상적으로 장애인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다가 부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과도한 관심과 존중을 받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부 때문에 과도한 친절과 존중을 받는 상황, 익명의 장애인으로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상황 사이에서 영화 속 부자 주인공들이 겪었을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중도에 장애를 가졌다고 부자 주인공의 계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 주인공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하층민으로의 추락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업사이드>의 필립이 자신을 걱정해서 응급실로 데려간 이분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 연명치료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장수의 태도에서 그런 입장은 잘 드러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입장인 거죠.

<언터처블:1%의 우정>과 <업사이드>의 생일파티 장면에서 카메라는 춤추는 드리스와 델의 역동적인 몸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부자 주인공들의 부러워하는 눈빛에서 장애에 대한 영화의 태도는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영화 속에서 장애인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 위치합니다. 장애를 갖기 전의 부와 여러 자산들 때문에 사회적 지위는 여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 주인공의 내면에서 장애를 가진 삶은 가장 밑바닥 인생인 것입니다. 실화에 근거했기에 <언터처블:1%의 우정>과 <업사이드>가 주는 감동을 의심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진웅과 설경구의 연기력, ‘우정’과 ‘지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착한 메시지, 그리고 느와르까지 섞여 있는 다채로운 재미의 <퍼펙트맨>이 더 흥행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장애라는 상황이 절망과 비극으로만 점철되어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하층민보다 더 바닥의 삶으로 그려지는 장애,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극적 장치는 영화 속에서만 통용되기를 바라며, 영화는 꼭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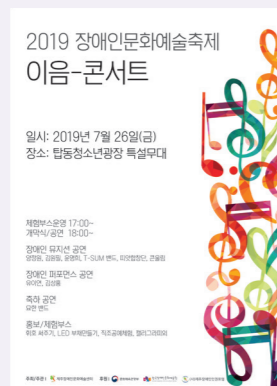


2019 정책과대안포럼 장애정책박람회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은 10월 16일 이룸 센터에서 장애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21대 총선과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앞두고,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장애정책박람회는 2017년 시작, 올해 세 번째를 맞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기관으로 함께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19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이음 콘서트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19년 7월 26일 제주시 탑동 청소년광장에서 열린 이음콘서트를 후원했다. 탑동 청소년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이음 콘서트는 장애인 뮤지션 양정원, 김원필, 윤명희, T-SUM 밴드, 띠앗합창단, 큰울림이 공연했다.

퍼포먼스로는 유이연, 김상홍의 공연과 묘한 밴드의 축하공연 등이 열렸다. 그밖에 체험부스는 휘호 써주기, LED 부채만들기, 직조공예 체험, 캘리그래피 등을 운영하였다.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했다.



# 2019 제주국제 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2019 Jeju International Universal Design Expo



UD 학술    UD 공감    UD 전시    UD 체험

## 2019. 11. 28(목) ~ 11.30(토)

###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 물 위의 모든 것, 스코트라

- 수상태양광, 해양레저, 수상플로팅, 수상건설 등 수상 부유구조체 설계, 제작 및 시공 전문기업으로서 안전과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4년부터 개발된 멀티룸 플로트는 일반형 플로트보다 높은 강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플로트 위 수상부유식 건축물 제작과 중장비 주행 테스트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업 분야

### Wherever

백령도에서 제주도, 독도까지 전국 어디든

### Whatever

부교, 계류시설을 포함한 물 위의 모든 것을

### However

설계, 제조, 시공, 임대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드립니다.

## 적용 사례



# Everything on the water 물 위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스코트라에서 설계하여 18년도에 완공한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18.7MW) 전경입니다.

## 스코트라, 국내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

총 40MW 이상의 수상태양광 수행 경험과 국내 유일의 댐 시공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고 품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합니다.

- 유휴수면 사용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소 부지 한계 극복
- 환경영향평가로 생태보존성 우수성 입증
- 수면냉각효과에 따른 발전효율 향상

## 1,200건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수상플로팅 전문기업!



일반형 플로트 및 전 세계 유일의 특허제품인 멀티룸플로트를 활용한 계류장, 마리나시설, 수상레저시설, 부잔교 및 수상태양광 부유구조체 등의 설계·제조·설치·임대 등 수상플로팅 사업 전반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